[서식 예]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세무서장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O O O O O . O . 자 증여세 988,000,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이 유

- 1. 피고는 원고와 소외 ◎◎물산(주)이 각 2분지 1씩 공동소유인 부동산(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만 함)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 전체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◆◆ 물산(주)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면서 20○○. ○. ○.자로 증여세 988,000,000원을 부과하여 고지한바 있습니다.
- 2. 이 사건 거래 경위
 - 1)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◎◎물산(주)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위 원고 소유지분을 20○○. ○. ○.경 △△△종합금융(주)에 금2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, 계약금으로 금20억 원을 받았습니다.
 - 2) 그런데 공동지분권자인 ◎◎물산(주)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과

상의도 없이 매도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차라리 한 건물의 소유자를 위한 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동 요청을 아주는 조건으로 위 원고가 위 △△△종합금융과 계약해제로 배상하게 될 금40억 원중 계약금을 제한 금20억 원을 ◎◎물산(주)이 부담하고, 매매대금을 유예하는 대신에 이자부담금 3억 원을 추가하여 금223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, 원고는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손해가 없다면 ◎◎물산(주)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20○○. ○. ○○. 자로 위◎◎물산(주)에 위약금 40억 원을 배상한다는 전제 하에 금40억 원을 공탁하고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○○. ○. ○.자로 ◎◎물산(주)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위 공탁금 40억 원은 위 △△조종합금융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억 원에, 위 ◎◎물산(주)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0억 원을 합하여 공탁한 사실이 있습니다.

3) 이에 따라 위 계약은 이행완료 되어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◎◎물산(주)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.

3.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부당성

- 1) 사안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는 원고와 ◎◎물산(주)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위거래 중 매매대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1항의 의제증여로 의율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 처분을 하는 위법하고도부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.
- 2)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은 처음 계약자인 △△△종합금융의 내부문서인 통지서기재에 의해서도 명백하여, 실제 원고가 위 ◎◎물산(주)으 로부터 증여 받은 가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입니다.

4. 결론

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 부당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납세고지서

세액계산명세표

주민등록등본

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» 아래(2) 참조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행정심판, 행정소송 >> 서식 >> 취소소송